

3. 그 밖에 물류신기술 및 첨단물류시설등의 개발 · 보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신기술 · 첨단물류시설등 중 성능 또는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수한 물류신기술 · 첨단물류시설등으로 지정하여 이의 보급 · 활용에 필요한 행정적 ·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<신설 2018. 6. 12.>

④ 시 · 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고, 그 내용을 제14조에 따른 지역물류기본계획과 제16조에 따른 지역물류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<신설 2013. 8. 6., 2018. 6. 12.>

⑤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적인 기준, 제3항에 따른 지정 및 지원의 기준 ·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신설 2018. 6. 12.>

[제목개정 2018. 6. 12.]

제58조(물류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의 육성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 ·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 · 도지사는 물류 관련 기술의 진흥 및 물류신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를 지도 · 육성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3. 8. 6., 2018. 6. 12.>

② 국토교통부장관 ·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 · 도지사는 물류 관련 기술의 진흥 및 물류신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 등으로 하여금 물류기술의 연구 · 개발에 투자하게 하거나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출연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3. 8. 6., 2018. 6. 12.>

③ 국토교통부장관 ·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 · 도지사는 물류분야의 연구나 물류기술의 진흥 등에 현저한 기여를 했다고 인정되는 공공기관 · 물류기업 또는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.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3. 8. 6.>

[제목개정 2018. 6. 12.]

제2절 환경친화적 물류의 촉진

제59조(환경친화적 물류의 촉진) ① 국토교통부장관 ·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 · 도지사는 물류활동이 환경친화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3. 8. 6.>

② 국토교통부장관 ·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 · 도지사는 물류기업, 화주기업 또는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2조 제11호가목에 따른 개인 운송사업자가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적 ·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3. 8. 6., 2020. 10. 20.>

1. 환경친화적인 운송수단 또는 포장재료의 사용
2. 기존 물류시설 · 장비 · 운송수단을 환경친화적인 물류시설 · 장비 · 운송수단으로 변경
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친화적 물류활동

③ 시 · 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고, 그 내용을 제14조에 따른 지역물류기본계획과 제16조에 따른 지역물류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<신설 2013. 8. 6.>

제60조(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촉진) ① 국토교통부장관 ·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 · 도지사는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에 대하여 환경친화적인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을 권고하고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3. 8. 6.>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세부적인 기준 및 지원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시 · 도지사는 제1항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고, 그 내용을 제14조에 따른 지역물류기본계획과 제16조에 따른 지역물류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<신설 2013. 8. 6.>